

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07호(2008.09.11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2013.02.28.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56호(2016.06.02.)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85호(2017.06.01.)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66호(2017.07.20.)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07호(2017.11.16.)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,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7-98호(2017.11.30.) 사업시행인가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12호(2018.04.19.)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15호(2019.04.04.)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,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9-82호(2019.10.24.)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07호(2023.05.25.)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24-05호(2024.01.18.)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고시 된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
2.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08월 29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대(94,614.2㎡)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1) 성 명 :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(조합장 이종왕)
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27, 상가A동 B202호(흑석동)
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44개월

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7.11.27.

바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 : 2024.08.27.

사. 변경사유

- 1) 이주 및 철거 등 추진 중으로 최초 수립한 시행기간보다 연장 필요에 따른 **정비사업
시행기간 변경**
- 2) 누락필지 추가 및 경계필지 조정으로 인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**정비
구역 면적 변경**

아. 변경내용

- 1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(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 → 144개월)
- 2) 정비구역 면적 변경($93,641.2\text{m}^2 \rightarrow 94,614.2\text{m}^2$)